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22. / (총 9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박 현 수	전 화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172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유 보 영		044-202-1820
교민지원팀	담 당 자	신 하 늘		044-202-1811
국토교통부	과 장	김 기 용		044-201-3526
해외건설지원과	담 당 자	이 성 훈		044-201-3527
외교부	과 장	조 주 성		02-2100-8201
재외국민안전과	담 당 자	박사무엘		02-2100-8206
국방부	과 장	김 은 경		02-748-6350
국제평화협력과	담 당 자	유 승 수		02-748-6351
중앙방역대책본부	팀 장	박 혜 경		043-719-9050
총괄팀	담 당 자	류 시 익		043-719-905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 ▲이라크 건설근로자 이송 및 방역
 지원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 ▲이라크 건설근로자 이송 및 방역 지원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2주간 국내발생 확진자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신경을 써야 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또한 장마 이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지나 유원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 피서지·관광지에 대한 방역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미 마련한 장소별·시설별 대책이나 수칙들도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방역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 □ 아울러 마스크 공적공급이 종료되었지만 동향을 계속 점검하여, 마스크 수급이 시장에 소위 '소프트랜딩'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사후관리를 방역 당국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 하는 데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정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행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다소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 하는 등 감염 확산의 지역적 편차도 큰 상황**임을 고려해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되었다.
 - * (7.1~7.7) 평균 36명 →(7.8~7.14) 평균 22명 → (7.15~7.21) 평균 14.6명
 - ** 6월 이후 교회 집단 감염 사례는 수도권·광주·대전에서만 발생











- □ 이에 7월 24일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해제할 계획이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행정 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파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 광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7.29)까지 행정조치 유지하되,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조치 해제 여부 결정
 - 아울러 앞으로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 아울러,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2 이라크 건설근로자 수송 및 방역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이라크 건설근로자 수송 및 방역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이라크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7월 17일 이라크 내 우리 건설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하여 국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7월 23일(목)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라크로 파견해 귀국 희망근로자 290여 명을 공중급유기(KC-330) 2대로 귀국시킬 계획이며, 7월 24일(금)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 외교부, 국방부, 의료진(군의관 2명, 간호장교 2명, 검역관 4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라크 정부에 마스크 5만 장 전달, 탑승 전 증상확인 및 기내에서의 응급상황 대비
-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 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 시설에서 2주간(7.24.~8.7.)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인 만큼, 우한, 이태리 교민 등의 이송 경험*을 바탕으로,
 - * 정부 임차 전세기를 투입한 귀국 지원 사례는 총 6개국 1,707명
 - 이번 이라크 건설근로자의 이송에 있어서도 해외유입 감염의 지역사회 전파가 없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우리 근로자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보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3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군 코로나19 검사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의 군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훈련소 인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방지하고자, 8주 동안 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다.
 - * 육군훈련소, 해·공군 교육사령부 등 전국 30개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5월 3주차부터 7월 2주차까지 검체 취합법을 활용해 시행
 - 전체 검사자 46,835명 중 1명(0.002%)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 이번 검사는 입소 장정에 의한 감염병의 군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장병들이 안전하게 훈련하고,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8주**(7월 3주차 ~ 9월 2주차) **동안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기존 훈련병에서 **장교·부사관 후보** 생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19 항체가 조사도 추가로 시행하여 청년층의 지역별 감염률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활용할 예정이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및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 하였다.
 - 7월 2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797개소,
 ▲음식점·카페 11,705개소 등 40개 분야 총 23,635개소를 점검하여,
 - 마스크 미착용 등 121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8개반, 47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 점검 결과 262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428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통해 7월 21일(화)에 44건의 신고·제안이 접수되어 총 1,208건이 접수되었으며,
 - 이 중 **892건(73.8%)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2,20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81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38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9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21)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계도 조치 하였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5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1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7월 21일) 입소 145명, 퇴소 172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289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5.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 7.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8.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